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관(안)

제정 : 2016년 8월 1일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포럼의 명칭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라 한다.

제2조(목적)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포럼")의 목적은 스타트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을 지원하고, 스타트업의 공동 이익을 대변하기 위함이다.

제3조(사업) 포럼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포럼 회원 간 정보의 교환 및 권익보호
2. 스타트업 관련 단체 연구기관과의 업무제휴 및 공동사업 전개
3. 스타트업 관련 자료의 수집, 분석과 조사연구 및 간행물의 발간
4. 인재양성을 위한 연수, 교육사업 및 학술행사
5. 스타트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개발
6. 스타트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대정부 정책건의 및 전문가 그룹 활동 지원
7. 기타 포럼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제2장 회원

제4조(회원)

포럼의 회원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회원
2. 준회원

제5조(회원의 자격)

포럼의 회원으로 가입을 희망하는 자는 포럼 활동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포럼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회원이 된다.

1. 정회원은 스타트업과 관련된 법인 및 단체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로 포럼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의 가입 승인을 득한 자로 한다.

2. 준회원은 스타트업과 관련된 법인 및 단체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로 포럼 활동에 뜻을 같이 하는 자로 한다.

제6조 (회비) ① 포럼의 회비는 연회비와 특별회비로 한다.

② 회비의 납부방법과 금액 등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포럼의 규정 및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② 회원은 포럼 운영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각 영역별 분과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다.

제8조(탈퇴 및 제명)

① 회원은 탈퇴를 희망할 경우 탈퇴원을 제출하고, 탈퇴와 동시에 포럼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고 의무를 면한다.

②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탈퇴 또는 제명한다.

1. 포럼의 정관 및 제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2. 1년 이상의 회비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3.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특별 결정 사안의 경우
4. 기타 포럼의 명예와 권익을 훼손하였을 경우

제3장 임원

제9조(임원) 본 포럼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의장은 1인으로 하며 사무국과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운영위원은 20인 이내로 구성하며, 운영위원은 사무국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3. 의장과 운영위원은 무보수명예직으로 한다.

제10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대외적으로 포럼을 대표한다.

② 의장은 운영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11조(임원의 임기)

-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 ② 보궐로 선출된 운영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4장 운영위원회

제12조(운영위원회 구성)

- ①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② 운영위원회는 사업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 의장 혹은 운영위원의 과반수이상 승인할 경우 소집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포럼 정관 및 규정의 제·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포럼 사업에 관한 사항
3. 포럼 해산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5. 기타 포럼 운영상 필요한 사항

제14조(운영위원회의 의결방법)

- ①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경우에 따라 온라인을 통해서도 결의 할 수 있다.
- ② 의장은 정관 제13조에 따른 의결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서면의결 할 수 있다.
 1. 부득이한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경우
 2. 기타 운영위원회 의장이 필요한 사항
- ④ 제3항 제1호의 경우 운영위원은 서면결의 시작일로부터 7일 이내에 협회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찬성의결로 간주한다.

⑤ 운영위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운영위원회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⑥ 운영위원은 서면으로 의장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운영위원회 개최 시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 및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록에는 의사 경과 및 결과 등을 기재하고 의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2. 회의록은 협회에서 관리한다.

제5장 조직 및 사무국

제16조(조직 및 사무국의 구성)

포럼의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에서는 조직(분과위원회 등)을 구성할 수 있으며, 포럼 전반의 모든 사항은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협회'라 한다)에서 운영한다.

제6장 재정 및 회계

제17조(경비의 총당 등) 포럼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후원금 및 수입금 등으로 조달한다.

제18조(회계연도) 포럼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부칙

제1조(정관의 효력)

정관은 운영위원회 승인을 받는 시점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초대 의장 및 운영위원)

초대 의장과 운영위원은 포럼 발족을 위한 사전 회의에서 선정된 자로 한다. 이는 회의록에 기재하여 문서로 남긴다.

제3조(회원 가입)

회원 가입은 [별표1]에 따라 진행하며 회원가입신청서는 [별지1]에 작성하여야 한다.